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연번	납입대상	납입금액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3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5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금융신탁기금에 출연	1천63만 특별인출권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 출연	45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9	국제통화기금의 라이베리아 지원금융에 출연	713만9천270 특별인출권
10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억3천910만 특별인출권
11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 출연	10억원
12	국제통화기금의 자연재해 및 분쟁종식국가 긴급지원계정에 출연	10억원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 출연	2억4천6백만원
15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
1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7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 출연	20만 미합중국달러
18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9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20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센터계정에 출연	6억2천500만원
2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989만8천25 특별인출권
22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23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4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천476만3천414 특별인출권
25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6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27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8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9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0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31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32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 출연	443만3천365 특별인출권
33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34	국제통화기금의 수단 지원금융에 출연	3천162만8천282 특별인출권
35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36	국제통화기금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에 출자	1천480만 특별인출권
37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204만 미합중국달러
38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출연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
39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552만 미합중국달러
40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출연	1천110만 미합중국달러
4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
42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533만 미합중국달러

43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 금에 출연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44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 력기금에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45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 금에 출연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12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